

제3종시설물의 해제고시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

2022년 02월 14일

충청북도 영동군청의 장

대상 시설물			지정(해제)사유	안전점검·안전조치에 관한 사항	비고
시설물 명칭	소재지	관리주체			
신흥교	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신흥리 89-6	영동군청 건 설교통과	중복 관리시설물	중복 관리시설물	